

# 유사석유제품 유통실태 및 근절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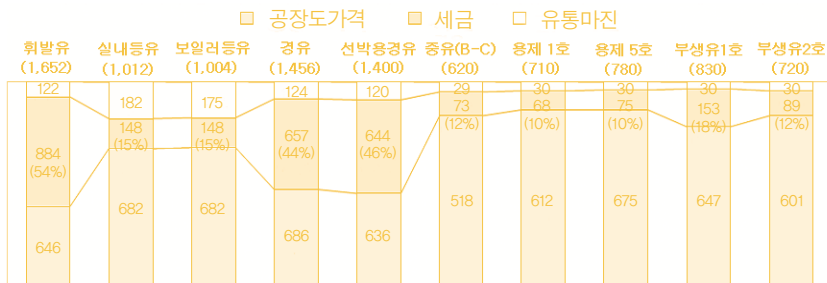
이병욱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사무관

## 유사석유제품 유통현황 및 문제점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한 결과('07년 현대리서치 전화 설문조사 의뢰) 약 61.8%가 “값이 싸서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간 세금격차가 있어 이를 상호전용하여 혼용시 세금 포탈에 의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공급자와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유사석유제품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 (석유제품간 가격구조 참조)

\* 유사휘발유 : 용제 + 톨루엔 + 메탄올, 유사경유 : 경유 + 등유(또는 용제류)

〈표1〉석유제품간 가격구조



주. ( )은 소비자 판매가격(원/ℓ, 2008년 1월 기준)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의 유통량은 전체 휘발유의 약 10%, 경유의 1.5% 수준으로서, 유류세 탈루액은 연간 8,741억원으로 추정('06.10월, 예경연)되고 있는데, 이는 '06년 석유류 세수(약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탱크 설치, 배달판매, 게릴라식영업, 이동식 제조장 등 판매수법이 다양화되고 있고, 월 수백~수천만원 부당이득에 비해 100~200만원 정도의 경미한 벌금형 처벌, 소비자의 값싼제품 선호에 의한 준법정신 해이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인 석유품질관리원의 비석유사업자(길거리 판매업자 등)에 대한 단속권한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6조원, 국세수입의 19% 차지) 대비 3.4%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유사석유제품은 메탄올·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자동차 엔진부품 부식을 촉진해 엔진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고장 뿐 아니라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유사휘발유는 정품 휘발유에 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유해배기가스를 배출시켜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 아울러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과 선량한 석유판매업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및 석유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탱크 설치, 배달판매, 게릴라식영업, 이동식 제조장 등 판매수법이 다양화되고 있고, 월 수백~수천만원 부당이득에 비해 100~200만원 정도의 경미한 벌금형 처벌, 소비자의 값싼제품 선호에 의한 준법정신 해이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인 석유품질관리원의 비석유사업자(길거리 판매업자 등)에 대한 단속권한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이 도로변에서 판매되는 유사휘발유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학원, 운수·화물업체, 차고지 등 대형 자가소비처에서 유사경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06년의 경우 전국 약 1,800개의 자가주유취급소 중 320업소를 합동단속하여 83업소(적발율 26%)에서 '07년의 경우 712업소를 합동단속하여 80업소(적발율 11.2%)에서 유사석유 사용으로 적발되었다.

## 그 간의 추진 실적

###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벌 규정 신설

유사석유 길거리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에 대한 약한 처벌로 재영업을 실시하고, 소비자는 싸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07.4.2, 본회의 통과, 7월 28일 시행)하여 유사석유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사석유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요를 차단하여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 유사석유제품 단속강화

지난해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및 노상판매 등 비석유사업자에 대해 약 6,200여건의 유사석유제품을 적발했으며, 특히 7월 28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사용자 과태료 처벌이 시행됨과 동시에 실시한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업소 및 사용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약 81% 업소가 근절되는 성과를 냈다.(최근 3년간 유사석유제품 단속현황 참조)

(표 2) 최근 3년간 유사석유제품 단속현황

구분	석유사업자			비석유사업자		
	'05년	'06년	'07년	'05년	'06년	'07년
검사실적(건)	84,506	88,171	92,064	7,530	9,112	7,189
유사실적(건)	533	658	540	6,622	8,506	5,654

이는 수요차단을 통한 판매업소의 판매부진과 강력한 단속 및 유사석유 사용자 과태료처벌 대국민 홍보 및 계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일부 유사취급 주유소의 이중탱크, 비밀스위치 설치에 대응하기 위해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을 14대에서 23대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07년 3,442업소를 검사하여 34업소를 적발하는 등 판매수법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등유를 화물차량 등의 연료로 불법 판매,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말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07년 총 7업소를 적발하여 신종 불법판매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한편, 제조장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통 상류부문 원천 차단을 위해 제조장 포상금액을 상향(300만원→700만원)하는 신고포상제도 개정하였다. ('07.3.8)

### 용제 생산업체 실태조사 실시

지난해 3월~4월 1달여간 용제의 올바른 유통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 주원료인 용제의 생산 및 유통 주체인 22개 용제생산업체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석대법을 위반한 8개업체를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용제의 불법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 향후 근절 방안

### 유사석유 원료 공급차단

용제수급상황이 급변하거나 자가소모량이 큰 업소, 용제1호를 페인트희석용으로 공급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석유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사석유 제조여부 확인 및 용제 공급자 역추적 단속을 실시하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용제 TFT를 운영하여 미보고 석유계 용제류 및 석유중간제품 등을 포함한 용제 품질기준을 정비(현 20종 → 10종)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사석유 원료로 사용 가능한 용제류 중 수급보고 대상이 아닌 제품(미보고 석유계 용제류, 석유중간제품 등)을 용제수급상황보고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간 유통흐름을 파악하고, 용제수급상황보고 시스템에 용제 대량 소비자(월 10kl 이상 사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용제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 및 유사경유 대형사용처 단속강화

상습 영업업소 및 배달판매업소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건설현장, 운수회사 등 석유제품 대형사용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유사석유 사용 확인시 과태료 부과 및 유가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유사석유 취급 확인시 공급자를 끝까지 역추적하여 단속의 효율화를 꾀하고, 또한 석유제품 품질관리 및 불법제품 사용시 폐해 등에 대해 대형사용처 관리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용자를 올바르게 계도할 예정이다.(3월)

###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단속 및 예방강화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에 대한 단속은 유사경유 유통증가에 따라 경유 검사물량을 휘발유 대비 약 1.5배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유사취급업소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노출 검사시험차량(23대)의 압행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석유사업자에 대한 품질관리 안내문을 발송하여 유사취급 예방을 유도하고,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사용하는 행위 등 신중 불법판매·사용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잠복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범국민 공감대 형성(계도, 홍보)

TV,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유사석유 사용안하기' 공익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역별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이동홍보차량 및 전시물 등을 이용한 찾아가는 홍보 및 계도를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 각 계층(중·고·대·일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2회 유사석유 추방 표어·포스터·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유사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유사석유제품 추방 결의대회'를 다양한 컨셉으로 개최(11월 예정)할 예정이다. 